

Hana 1Q bank CMS^{Mega} 이용 계약서

_____ (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과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은 고객이 은행의 Hana 1Q bank CMS^{Mega}(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과 CMS서버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및 Gateway, 통신 서버 등(이하 “CMS 서버”라 합니다)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제20조 (준용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ERP 시스템”이라 함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ERP를 포함한 전산 시스템을 말합니다.
2. “계좌”라 함은 은행과 다른 은행에 개설한 예금 관련 계좌, 증권회사에 개설한 위탁계좌, 보유 신용카드 관련 계좌 등을 말합니다.
3. “CMS 서버”라 함은 서비스의 일부로 고객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은행시스템과 서비스 및 서비스와 ERP 시스템과의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산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4. “통신회선”이라 함은 은행시스템과 CMS 서버간 통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용회선, VAN, 일반회선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범위)

이 계약에 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와 그 거래내역의 파악을 포함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2. 은행이 펌뱅킹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거래를 선별하여 구성한 표준화 된 전자금융 거래
3. 고객의 ERP시스템과 CMS서버와의 각종 금융거래데이터 연계
4. 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전자금융 및 자금관리서비스
5.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와 그 거래내역 등 펌뱅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를 고객이 별도 약정한 거래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거래내용에 대한 조회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제4조 (이용자 정의 및 권한)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이용자의 권한과 역할 및 인원을 감안하여 서비스내에서 이용자 ID를 고객의 책임하에 생성하며,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 Gateway ID는 신청서에 ID 등 이용자 정보를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Gateway ID는 Master ID로서 총괄관리자 ID 생성, 총괄관리자 비밀번호 초기화 및 CMS 서버를 Log-in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총괄관리자는 관리자 및 이용자 ID 관리, 결재 단계, 내부 통제 등 이용 환경 설정 및 서비스관리 환경 설정의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3. 관리자는 실행자 및 이용자 ID 관리, 결재 단계, 내부 통제 등 이용 환경 설정 및 서비스관리 환경 설정의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4. 실행자는 출금계좌 및 실행 메뉴에 대한 이용 권한을 가진 이용자로 본인의 책임하에 Log-in 비밀번호, 출금계좌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5. 총괄관리자는 고객의 내부 결재단계 및 통제를 위하여 중간 결재자, 거래 작성 이용자, 단순 조회 이용자들을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지정)

- ① 은행은 제3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서비스와 그와 관련된 제3조 제6호 내지 제7호를 고객에게 기본으로 제공하며, 이용할 전자금융거래는 고객이 정합니다.
- ② 고객이 제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③ 고객이 이용하고자 하는 전자금융거래가 별도의 이용 약정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은행과 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6조 (CMS 서버 등의 설치)

- ① 고객과 은행은 제5조에서 정한 서비스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각의 책임하에 적기에 조치 (프로그램 설치, 개발 등) 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제3조 제1호 내지 제2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적 지원은 무상으로 제공하며, 기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 ③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전용회선, CMS서버 또는 PC,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 등의 전산자원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이는 은행이 제시하는 권고 사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이 이용하는 이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그램, DBMS 등이 설치될 고객의 전산환경에 대한 보안수준은 은행이 제시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은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음의 구성요소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제3조 제2호의 서비스 프로그램
 - 서비스 관리 및 운영 module 등
- ⑥ 은행이 제공한 제5항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별도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은행에 있으며, 은행은 고객에게 이 계약 기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이용개시)

- ① 고객은 CMS 서버 등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은행에 서비스의 개시를 요청합니다.
- ②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펌빙 서비스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CMS 서버 등에 등록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

- ① 고객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설명서에 따라 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② 서비스 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은행의 펌빙 등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절차 및 기준에 따릅니다.
- ③ 고객은 이용자의 퇴사 또는 담당 직무의 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서비스 변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④ 고객은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반복적으로 거래가 처리되는 서비스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처리를 위한 기능만을 제공하는 경우, 동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이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그 내용과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 무휴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에 은행의 펌빙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 시간 이내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회사와 관련된 거래 (조회, 이체 등)는 당해 금융회사의 정책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의 정책 또는 사정에 따릅니다.

제10조 (거래내용의 확인)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거 조회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은행은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대가의 지급)

- ① 은행이 계약기간 중에 이용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지하기로 하며, 고객은 은행이 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의 수용 여부를 회신하기로 합니다.
- ②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은행이 서비스 제공 또는 추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금 _____ 원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제7조의 서비스 이용개시 이전에 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은 서비스 이용 개시 후 그 이용 대가로 매월 제2항 비용의 _____ % (또는 금 _____ 원정)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제3항의 월별 이용 대가는 다음달 10일(공휴일인 경우 은행의 익영업일)에 납부하기로 하며, 은행은 다음의 계좌에서 그 대가를 예금거래본약관 등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 등의 제시 없이 인출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 ⑤ 납부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납부할 날 익일부터 납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일 현재 은행이 고시한 원화대출 연체 이자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⑥ 고객이 제2항의 이용 대가를 은행과의 분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⑦ 이 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수수료는 이 계약의 효력 상실일에 고객의 수수료 인출계좌에서 인출하기로 합니다.
- ⑧ 제5조에서 정한 서비스에 포함되어 제공하는 펌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의 기준과 납부방법 등은 그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별 계약 또는 은행이 정하여 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 (서비스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관리)

- ① 고객은 은행이 제공한 프로그램 등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 ② 은행은 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합니다.
 1. 고객이 제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
 2. 고객이 등록한 사용자 ID, 결제 단계 등 내부 결제 정보와 업무 권한, 계좌 및 메뉴 접근 권한 등 내부통제 정보
 3.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설치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CMS 서버와 연결된 고객의 PC 등에 저장되는 정보

제13조 (책임과 의무)

- ①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이 구축한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은행이 제공한 프로그램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이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고객은 제6조 제4항의 보안 수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과 사전 협의 하기로 합니다.
- ③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관련 프로그램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훼손시키거나 변경하지 못하며,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사본을 만들 수 없습니다.
- ④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보관하고 정리하여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⑤ 고객은 서비스의 가동 상황과 주기적으로 처리하도록 설정한 전자금융거래의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4조 (사고 등의 통보)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고 또는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고 또는 사유에 대한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상대방에 통보하고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생경위 및 대책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면책)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그 상대방이 입은 직간접 또는 잠재적인 손실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규제조치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통신기기, 통신회선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발생한 직간접 또는 잠재적인 손실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은행이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
 3.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4. 고객의 착오 또는 오류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의 경우
 5. 다른 금융회사의 펌뱅킹 서비스 장애, 정지, 해지로 인한 거래불능의 경우
 6. 고객이 CMS 서버 또는 고객 PC등에 등록한 펌뱅킹 서비스 정보, 계좌관련 정보 등이 상이하거나 수정되어 거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7. CMS 서버 또는 고객의 ERP 및 고객의 사용자 PC 등에서 제6호 및 제7조 제2항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16조 (비밀유지)

고객과 은행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 서비스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효력의 발생)

이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제18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과 은행은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CMS 서버 정보의 수정이나 이용하는 전자금융 서비스의 추가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은 고객이 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동 신청서는 이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부도, 영업정지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이 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통지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통지가 없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보며, 이후의 순차연장의 경우도 같습니다.
- ④ 계약이 해지되면 은행은 제6조 제5항의 구성요소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⑤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고객은 고객이 보유한 서비스와 관련된 CMS 서버 등의 프로그램, 데이터, 문서 등을 고객의 책임으로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19조 (합의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준용 규정)

- ① 이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예금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과 당해 예금의 거래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기업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 업무규약을 준용합니다.

제21조 (특약사항)

고객과 은행은 아래의 사항을 특약으로 정합니다.

고객과 은행은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고객”

성명 :
주소 :

대표이사

(인)

“은행”

성명 :
주소 :

(주)하나은행

지점장

(인)

